

(第11回－文化教育第3次)

<p>일반직의사 초임(5급 1호봉)의 대비표 는 별첨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.</p> <p>다. 결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특별시 교육감소속 지방의무직렬 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명과 조문배치 및 수당지급 대상의 변경에 따라 현실에 맞게 법문을 개 정하였으며, 구 조례와의 제도상 동질 성을 강조하고 있어, 전문 개정으로 볼 수 있음. ○ 의무직렬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실 질상 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, 서울특별시의 각 병원이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의 수당체계와 통일을 기하고, 동일수준으 로 현실화하고, 특히 계급 및 소지 자격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 합 리적이라고 보여지며, ○ 교육청에서는 1993. 7. 15 교육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후속 행정조치로 조 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안 이라고 사료됨. <p>.....</p> <p>이상 報告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喆鎬 本 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(「없습니다.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그러면 質疑와 答辯을 終結하겠습니다. 서 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教育監所屬 地方公務員診療業務手當支給에 關한條例改正條例案 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의 異議가 없으시겠습니까? (「없습니다.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 布합니다.</p>	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 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 에 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 교육감소속지방의무직렬공무원수당지급 에 관한조례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(수당지급)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 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의무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액은 별표의 지금구분 표에 의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【별표】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 문 의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 반 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-3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10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10,00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09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54,00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09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18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 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의 사, 치과의사로 한다.</p> <p>.....</p> <p>○委員長 李喆鎬 委員 여러분,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, 長時間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. 오늘의 議事日程 뿐만 아니라 1993年度 常任委員會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는 順序가 되겠습니다.</p> <p>그러면 散會를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15時 21分 散會)</p>	구 분	전 문 의	일 반 의	2-3급	710,000원	710,000원	4급	609,000원	554,000원	5급	609,000원	518,000원
구 분	전 문 의	일 반 의											
2-3급	710,000원	710,000원											
4급	609,000원	554,000원											
5급	609,000원	518,000원											